교수역량강화위원회운영규정 3-1-31

규정번호 3-1-31
제정일자 2019.3.11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4차 개정
관리부서 교수학습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수학습센터 제6조(기타위원회)에 의거 교수역량강화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2.06.08.)

제2조(기능) ①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

1. 교수역량(교수법)강화 프로그램 계획, 결산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
2. 교수역량(교수법)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교수역량(교수법)강화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교수역량(교수법)강화 업무와 관련하여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(개정 2024.7.24.)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교·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20.02.17., 2024.5.3)

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있다.(개정 2020.02.17., 2024.5.3)

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담당 실무자를 간사로 둔다.(개정 2020.02.17.)

제4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수학습센터장(이하 '센터장')을 당연직으로 한다.(개정 2022.06.08.)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총괄한다.(개정 2020.02.17.)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(개정 2020.02.17.)

제5조(위원회 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단, 필요에 따라서 서면결의 할 수 있다.(개정 2020.02.17.)

② 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회의록 작성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개정 2024.5.3.)

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7조(간사) <삭제 2020.02.17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2> (생략)

<3> 교수역량강화위원회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 "교육혁신지원센터"를 "교수학습센터"로, 제4조제1항의 "교육혁신지원센터장"을 "교수학습센터장"으로 변경한다.

<4> - <25> (생략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1항·제2항, 제6조제1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4호, 제4조제3항)